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 미신고 시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반출	359	138	509	154	617	431	684	472	637	2,234	2,806	3,429
밀반입	10	5	28	21	61	33	67	183	54	92	220	334
합 계	369	143	537	175	678	464	751	655	691	2,326	3,026	3,763

1. 신고 대상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신고 방법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휴대품 신고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여권번호: _____
여행기간: ____월 ____일부터 ____월 ____일까지
동반가족: 본인 외 _____명 항공편명: _____
전화번호: _____
국내 주소: _____

세관 신고사항 해당 사항에 “☒” 표시

1. 휴대품 면세범위(및면 참조)를 초과하는 “품목” ☐ 있음 ☐ 없음
※ 품목 상세 내역은 뒷면에 기재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2.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있음 ☐ 없음

3.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 있음 ☐ 없음
초과하는 화폐 등(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
[총 금액: _____]

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있음 ☐ 없음
가.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등
나. 위조지폐, 가짜 상품 등
다. 음란물, 복한 장악 물품, 도청 장비 등
라. 멸종위기 동식물(영양새, 도마뱀, 완충기,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종당, 사향, 약어거죽 등)

5.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있음 ☐ 없음
가. 동물(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
나.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다.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있음 ☐ 없음
가.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나. 다른 사람의 무탁으로 반입한 물품
다. 세관에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
라.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
로. 별송품, 출국할 때 “일시수출(반출)신고”를 한 물품 등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신고인: _____ (서명)
년 월 일
< 뒷면에 계속 >

1인당 “품목”별(술/담배/향수/일반물품) 면세범위

•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기증 또는 선물받은 물품 등으로서

술 2ℓ 합산 용량으로서 총 US \$400 이하
- 권련장: 200개(10갑)
- 시 가: 50개
담배 100개 합산 용량으로서 총 US \$400 이하
- 액 상: 20ml 이하
- 담: 1% 이상은 반입제한
▶ 관 용량만 선택 가능

향수 100ml 합산 용량으로서 총 US \$400 이하
- 다만, 농밀축수산물 및 향약제는 관세에 합당한 것으로서 총 40kg, 총 금액 10만원 이하 (물품별로 수량·종류 제한)

면세범위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

• 면세범위 이내 “품목” - 작성 생략
• 면세범위 초과 “품목” - 해당 품목의 전체 반입내역 작성
예 시: 술 총 3ℓ, 담배 10갑, 향수 30ml, 시계(가격 1천 달러) 반입 시
→ 술 전체, 시계(가격 1천 달러) 작성(면세범위 아닌 담배, 향수는 작성 생략)

품 목	물 품 명	수량·수량(이하)	금 액
술			
담배			
향수			
일반 물품			

※ 세관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여행자 세관신고 APP 화면 >

관세청

신고서 작성

신고안내사항 **세관신고사항**

성명 *
ANDROID

생년월일 *
1990-01-01

여권번호 *
.....

여권번호 검증

동반 가족 대표로 신고하시나요?
☐ 예 ☒ 아니오

1.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 있음 ☒ 없음

2.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 있음 ☒ 없음

3.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 있음 ☒ 없음

4.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넘는 화폐 등
※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
(미표시 통화는 원화 또는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
☐ 있음 ☒ 없음

5.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 ?
※ 있음 경우 '신고물품기재'에 세부내역을 기재
※ 농축수산물물은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에 표시
☐ 있음 ☒ 없음

QR코드 발급

↑
맨위로

3. 미신고 시 제재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조사국 외환조사과	책임자	과 장	조광선 (042-481-7930)
		담당자	사무관	박영작 (042-481-7931)

